## K-디지털 트레이닝 특정감사 결과

2025. 5.



## 목 차

I . 감사개요	1
Ⅱ. K-디지털	트레이닝 제도 현황2
Ⅲ. <b>감사결과</b>	6
① K-디지털	트레이닝 심사 과정6
② <b>K-디지털</b>	트레이닝 운영 과정 8
③ <b>K-디지털</b>	트레이닝 관리 및 성과평가9
V. <b>조치사항</b>	13

## Ⅰ 감사개요

#### □ 감사목적

- K-디지털 트레이닝(이하 "KDT")은 신기술·고숙련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표로 '21년 도입되어 훈련인원 및 사업예산 증가\*
  - \* **훈련과정**: 231개('21) → 416개('22) → 896개('24), **♣훈련인원**: 1.2만('21) → 2.2만('22) → 3.7만('24), **▲사업예산**: 2,224억('21) → 3,068억('22) → 4,756억('24)
- KDT 사업 훈련심사, 운영, 집행·관리·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 **감사근거**: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제2조 및 제6조제3항(특정감사)

####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본부 인적자원개발과(고용센터 포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감사범위) KDT 사업 절차별 제도운영 상태\*
  - \* (본부) 사업 운영 관련 제도(법령, 지침, 지도점검 기준 등)의 적절성 (심평원) 훈련과정 설계·공고·선정 과정의 적절성, 훈련과정 운영 성과평가 적절성 여부 (고용센터) 훈련기관 지도·관리·감독의 충실성 등
- □ 감사일정: '25.3.4.~3.31.
- □ 감사반 편성: 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총괄)** 감사담당관
  - (감 사 반) [훈련과정 심사·평가·환류] 5급 오○○, 6급 한○○ [훈련과정 운영·집행] 5급 송○○, 6급 김○○, 6급 문○○

#### 

#### □ 관련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제정 '97.12.24. 시행 '23.7.4.)

#### □ 제도 개요

- (배경) K-디지털 트레이닝은 KT·삼성 등 선도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서울대·성균관대와 같은 우수 대학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여
  -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
  - '24년부터 디지털 분야를 넘어 첨단 및 융합 분야를 포괄하는 신기술 분야 전반으로 훈련 분야를 확대·시행 중
- (특징) 모든 훈련과정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통해 함께 설계·운영하며, 현장의 실제 과업을 프로젝트로 편성(30% 이상)하여 경험·문제해결 능력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
-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훈련유형) 아카데미 유형**(훈련설계 측면) 기준

아카데미	내용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참여기업과 훈련기관 간 협약 체결, 프로젝트 기반(30% 이상) 훈련과정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민간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 체결, 채용연계형(50%, 협·단체 회원사) 훈련과정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삼성, KT 등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훈련과정
지역·산업 주도형 아카데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또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지역 및 산업 내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을 발굴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훈련과정
대학 주도형 아카데미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기업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참여기업과 함께 설계·운영하는 훈련과정

## ○ (훈련유형) 훈련대상 및 목적기준

훈련유형		내용		
일반과정(350시간 이상)		선도기업이 <b>직접 또는 협약</b> 을 통해 <b>훈련기관과 함께</b> 설계·운영하는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		
심화과정		기업의 중·고급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된 심화과정		
(350 시간 이하)	재직자 도약 과정 ('24년 신설)	프로젝트 100% 훈련을 통해 재직자가 고급·숙련 기술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 ('24년 신설)	사업주 등 <b>사업 경영자</b> 가 <b>신기술(생성형 AI)을 기업 경영 및</b> <b>관리에 활용</b> 하여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 (훈련 분야)

구분	세부 훈련 분야			
	디지털	1. Al 2. 클라우드 3. 사물인터넷 4. 메타버스	5. 5G·6G 6. 일반SW 7. 블록체인 8. 빅데이터 9. 사이버보안	
① 21개 신기술 분야 관련 직종	소재·부품	10. 이차전지 11. 차세대 디스플레이 12. 3D프린팅	13. 첨단소재 14. 반도체 15. 나노	
	로봇·드론	16. 로봇 17. 드론		
	바이오 헬스	18. 바이오 헬스		
	에코업	19. 에코업		
	에너지	20. 신재생에너지 21. 수소		

- ② 신기술 분야의 직무 능력간 융합된 직종 또는 인문사회분야 직무능력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직종
- ③ 기타 산업 현장의 훈련 수요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으로 지원이 어려운 직종

## □ 현황

## ○ 운영 현황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계획)
<b>예산</b> (백만원)	222,462	306,822	414,260	475,688	478,116
<b>지원액</b> (백만원)	81,454	233,952	369,114	475,499	-
집행률(%)	36.6	76.3	89.1	100.0	-
<b>훈련배정인원</b> (명)	24,015	28,521	36,580	44,000	45,125
<b>훈련인원</b> (명)	11,727	22,394	31,922	37,628	-
<b>중도탈락인원</b> (명)	681	1,529	2,479	3,485	_

## ○ 훈련과정 현황

구분		신청 과정	d(기관) 수		승인 과정(기관) 수			
丁正	′21년	′22년	´23년	´24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인공지능	65(48)	40(37)	55(43)	131(91)	45(37)	24(23)	35(27)	77(63)
클라우드	44(32)	46(29)	46(30)	54(41)	23(18)	16(12)	25(21)	35(30)
사물인터넷	21(19)	17(14)	8(8)	11(11)	14(13)	8(8)	6(6)	9(9)
메타버스	19(15)	32(24)	39(33)	48(33)	7(7)	15(12)	18(16)	33(26)
5G6G	-	3(3)	-	_	ı	-	-	-
일반s/w	22(19)	136(99)	198(122)	236(136)	14(13)	68(56)	106(82)	161(108)
블록체인	8(6)	12(6)	9(8)	5(5)	5(4)	7(4)	6(5)	5(5)
빅데이터	88(64)	72(57)	38(30)	79(61)	50(36)	36(32)	23(21)	53(44)
사이버보안	1(1)	4(3)	6(6)	16(11)	1(1)	3(3)	5(5)	10(8)
이차전지	-	-	-	1(1)	ı	-	-	1(1)
디스플레이	-	-	-	_	ı	-	-	-
3D프린팅	5(5)	5(4)	4(4)	5(4)	1(1)	1(1)	1(1)	4(4)
첨단소재	-	-	-	_	ı	-	-	-
반도체	1(1)	4(4)	3(3)	15(14)	1(1)	1(1)	3(3)	11(11)
나노	-	-	-	_	-	-	-	-
로봇	21(17)	23(19)	18(14)	31(24)	11(10)	8(8)	10(10)	20(16)
드론	-	1(1)	1(1)	5(5)	ı	-	-	1(1)
바이오헬스	1(1)	1(1)	_	6(6)	-	-	_	6(6)
에코업	-	_	6(5)	4(3)	-	-	4(4)	1(1)
신재생에너지	-	_	_	3(3)	-	-	_	2(2)
수소	_		_	-	-	-	-	-
기타	-	-	-	3(3)	-	-	-	2(2)
총 합계	296(139)	396(231)	431(229)	653(297)	172(90)	187(136)	242(162)	431(241)

<sup>\*</sup> 하나의 기관이 여러분야 과정 개설로 기관 수는 중복, 총계는 중복제거 후 순기관으로 작성

## ○ 훈련과정 운영현황('25.3월 기준)

구분	세부 내역	운영 현황	구분	세부 내역	운영 현황
	1. AI	101		16. 로봇	26
	2. 클라우드	57			
	3. 사물인터넷	13	로봇·드론	17. 드론	1
	4. 메타버스	46			
디지털	5. 5G·6G	-			
	6. 일반SW	238		18. 바이오 헬스	6
	7. 블록체인	9	바이오		
	8. 빅데이터	70	헬스		
	9. 사이버보안	15			
	10. 이차전지	1			5
	11. 차세대디스플레이	_	에코업	세코업 19. 에코업	
소재·부품	12. 3D프린팅	5	••		
	13. 첨단소재	_			
	14. 반도체	14	에너지	20. 신재생 에너지	2
	15. 나노	-	11 1 1 1	21. 수소	

## ○ 취업률

구 분	'21년	'22년	'23년
합계(%)	67.7	64.2	56.0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67.7	65.0	55.7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	62.3	52.1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	60.9	56.9
지역·산업 주도형 아카데미	-	68.4	70.0
대학 주도형 아카데미	-	-	-

#### 감사결과

 $\prod$ 

## 1 K-디지털 트레이닝 심사 과정

#### ① 심사평가위원 배정 기준 및 운영 미흡 (개선)

- ❖ 심사평가위원은 심사평가 대상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사업에 참여하여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 '24년 KDT 과정심사에 참여한 심사평가위원의 평균 과정 심사 건수 18건 ▲ 최고 심사 건수: 46건, 최저 심사 건수: 2건, 미참여 심사위원: 45명(29.8%)
- (문제점) <sup>①</sup>업무담당자 1인이 관리자 검토 없이 심사평가위원을 배정하여 불공정 우려<sup>\*</sup>, <sup>②</sup>4개 직종(이차전지, 첨단소재 등)의 심사 평가위원 인력풀 미구성
  - \* 인력공단은 전산으로 무작위로 3배수 추출 후 관리자가 무작위로 배정
- (조치) <sup>①</sup>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평가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 <sup>②</sup>심사평가위원 인력풀 미구성 직종은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심사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② 훈련선정심사 과정의 문제점 (개선)



#### ① 기본심사 중 준법성 심사 절차 미비 (개선)

○ (문제점) 준법성 관련 자료("25년)에 대해 훈련기관은 공식적 제출 의무가 없어 과정 승인 후 준법성 결격 사유가 확인되어도 과정 취소가 불가능 (거짓 또는 부정이 아니므로 부정훈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조치) 훈련과정 신청 시 공식 서면자료로 준법성 관련자료 제출 및 검증하도록 절차 개선
- ② 고성과 맞춤형 훈련과정 심사 기준 등 미흡 (개선)
- ❖ 고성과 맞춤형 훈련 심사절차

서면심사						
· 고성과 과정 별도 서면심사						
- 선정요건(8항목) 및 설계요건						
(4항목)* 충족 여부 심사						

# ▶ · 서면심사를 통과한 일반과정 및 고성과 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통합 심사

인터뷰심사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 \*(선정요건)<sup>©</sup>훈련생 모집 시 훈련생 역량 수준 고려, <sup>©</sup>기업수요를 훈련과정에 반영, <sup>©</sup>훈련생의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 <sup>@</sup>인프라수준 등 우수한 상태 유지, <sup>©</sup>고품질 훈련과정 구현, <sup>©</sup>훈련성과 제고위한 훈련생 지원, <sup>©</sup>훈련성과 기업에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sup>©</sup>모니터링 등을 통한 학습데이터 체계적 관리 (설계요건) <sup>©</sup>훈련기관·훈련과정 차별성, <sup>©</sup>고성과 목표 설정 유무, <sup>©</sup>고성과 목표관리, <sup>©</sup>훈련단계별 체계 수립
- ❖ 규정에 따라 심사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 일반과정은 심사항목 배점, 판정기준 등을 심사계획 시 모두 공고
- **고성과 훈련**은 배점 및 판정기준의 정함이 없음(심사항목만 공고)
- (문제점) <sup>①</sup>인터뷰심사를 일부과정만 심사하고 형식적으로 실시, <sup>②</sup>심사 항목에 대한 배점 및 판정기준을 정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음
- (조치) <sup>®</sup>전문적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인터뷰심사 방식 개선, <sup>®</sup>심사 항목에 대한 배점 및 판정기준을 정하고 심사계획시 공고
- ❸ 지방고용노동관서 의견 반영 미흡 (개선)
  - ❖ 심평원은 훈련과정 심사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 ❖ 고용센터는 '24년 하반기 훈련과정 심사 시 45개 과정에 대한 의견을 심평원에 통보(9개 고용센터에서 22개 훈련기관에 대한 45개 과정 통보)
  - (문제점) 의견 작성기준이 없어 추상적인 내용이 존재, 의견취합 및 심사 시 형식적으로 전달되고 심사지표 항목이 없어 고용센터 의견이 반영될 수 없음
  - (조치) 고용센터에서 통보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지표 및 관련 절차 개선

## 2 K-디지털 트레이닝 운영 과정

#### ①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유형 운영 미흡 (개선)

❖ 선도기업	❖ 선도기업·운영기관·파트너기관의 역할 구분				
구분	역할				
선도기업	선도기업은 <b>훈련과정 설계 및 과정 운영을 총괄</b> 해야 하며,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업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또한 투입 교·강사(현직자, 인증 강사 등), 협약기관(파트너기관 등), 훈련생 관리, 기타 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함				
운영기관	운영지원기관은 사업안내 및 홍보, 사업참여 신청 및 HRD-Net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훈련생 관리(모집, 평가, 취업 지원 등) 등 <b>훈련과정을 모니터링</b> 해야 함				
파트너기관	파트너기관은 인프라·컨텐츠 제공, 관련 플랫폼 등 <b>훈련에 필요한 지원</b>				

- (문제점) <sup>①</sup>협약 체결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과정 전반에 걸쳐 선도 기업의 형식적 참여 <sup>②</sup>훈련 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성 확보 미흡
- (조치) <sup>①</sup>훈련 과정 전반에 걸친 선도기업의 참여 촉진 방안 마련, <sup>②</sup>선도기업, 파트너기관 등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

#### [2]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유형 운영 미흡 (개선)

- ❖ 참여기업은 훈련과정 설계,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주제 제공, 취업 지원 등 과정 운영과 관련한 1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 훈련기관은 과정 신청 시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과정의 30% 이상 편성해야 함(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 (문제점) <sup>①</sup>참여기업의 형식적 참여에도 제재조치 불가능, <sup>②</sup>성과 평가 시 프로젝트 평가 효과성 미비, <sup>③</sup>정보 제공 부족으로 인해 훈련생이 **훈련과정**을 선택하는데 어려움 발생
- (조치) 처분 근거 마련 등 과정 운영 책임성 확보
   ※ 프로젝트평가 문제점은 [3]-[4]-❸, 정보제공 부족은 [3]-[5]와 병합조치

#### ③ 집체훈련의 비대면 실시간 훈련 변경 기준, 절차 미흡 (개선)

❖ '21~'24년 집체(대면) → 비대면 실시간 훈련 변경 현황(건, 훈련 시작일 기준)

구분	2021	2022	2023	2024	계
집체 → 비대면 변경 신청	369	348	128	122	967
집체 → 비대면 변경 승인	369	348	128	122	967

- (문제점) <sup>①</sup>집체훈련으로 승인 받은 후 비대면 훈련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심사 소홀, <sup>②</sup>비대면 훈련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대면훈련과 동일한 수준의 훈련장려금 지급
- (조치) <sup>①</sup>훈련생 동의 절차 신설 등 비대면 훈련으로 변경 승인 기준·절차 개선, <sup>②</sup>비대면 훈련 시 훈련장려금 지급의 적절성 검토

## 3 K-디지털 트레이닝 관리 및 성과평가

#### ① KDT 특성에 맞는 지도·점검 기준 미비 (개선)

#### ❖ 본부 시달 수시 지도·점검 결과

선정기준	합계	훈련내용*	교강사**	훈련 장소	장비	교재	출결	임의 합반
계	58 (100%)	27 (47%)	14 (24%)	3 (5%)	5 (9%)	7 (12%)	1 (1.5%)	1 (1.5%)
	28	15	7	-	2	4	-	-
	30	12	7	3	3	3	1	1

\* 훈련내용: 시간표 변경 미신고 25건, 교과목 임의변경 2건

\*\* 교·강사 : 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강사 대체 운영

- (문제점) 내일배움카드 지도·감독 매뉴얼 및 표준점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KDT에 맞는 점검 기준 및 점검 항목은 미흡
- (조치) 지도·감독 매뉴얼 보완을 통한 KDT 훈련에 맞는 점검 내용· 기준 제공 및 KDT 점검표 양식 개발

## ② 제재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미흡 (개선)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 기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다.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16조 제2항제3호	
1) <b>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u>훈련과정의</u> 중요 사항</b> 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와 1년 해당 직종위탁·인정제한
5)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요구

- (문제점) <sup>①</sup>위탁계약서에 훈련내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위반시 법적 조치 근거 미흡, <sup>②</sup>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불명확
- (조치) <sup>①</sup>위탁계약서에 훈련운영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제재 근거 마련, <sup>②</sup>훈련 내용을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포함되도록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보완

#### ③ 위탁 계약 변경인정 및 신고 처리 절차 개선 (시정)

❖ 일반계좌제 훈련·KDT 변경신고 대상 비교						
구분	일반계좌제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변경신고 대상	▲ 훈련·교강사를 인정받은 풀 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등 ▲ 인접 건물 내에서 훈련기준 시설면적 이상인 강의실로 변경 ▲ 노후, 불량 등으로 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상의 것으로 장비 교체 ▲ 최초 인정받은 훈련교재와 동일·유사한 훈련교재로 변경 ▲ 최초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전 이상의 것으로 변경 ▲ 최초 인정받은 소정훈련시간 및 교과목별 시간수에 변동없이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훈련시간표 변경	▲ 훈련·교강사(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 ▲ 훈련장소(훈련기관 소재지 내)  ▲ 훈련내용, 교과목별 시간 수, 훈련장비 및 훈련교재  ⇒ 참여기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협·단체 확인서 필요  ⇒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별도 확인서 불필요				

- (문제점) KDT 운영에 자율성·유연성을 부여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침·전산망 등에서는 유연한 변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행에 따라 변경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
- **(조치)** KDT 업무지침 정비 및 전산 시스템 개선, 지방관서(고용 센터)가 변경 업무를 잘못 처리하지 않도록 지도

- 4 KDT 성과평가 운영의 문제점
- ❶ 성과평가에 따른 심평원의 "사업배제" 조치 개선 (개선)
- ❖ 1차연도 훈련과정은 개설 여부, 2·3차 연도 훈련과정은 정량평가(70%)+정성 평가(30%)를 통해 훈련과정에 대한 증원·유지·조정·사업배제<sup>\*</sup> 조치
  - \*사업배제: '24년부터 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 미달(60점), 평가항목별 수준 미달 시 (40% 미만) 추가로 사업배제(36개 과정(28.8%))
- (문제점) <sup>①</sup>심평원의 사업배제 조치에 대한 법령·규정 근거 미흡 <sup>②</sup> 심평원의 사업배제 조치(처분)로 가중 처분 횟수에서 누락 되는 문제 발생
- (조치) <sup>①</sup>법률 자문 등을 통해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후속조치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 마련, <sup>②</sup>사업배제 조치 시 위반 횟수에서 누락 되는 문제 확인 후 보완책 마련
- ❷ 성과평가 지표 및 체계 개선 (권고)



- (문제점) 성과 평가지표(취업률, 고용유지율) 산출 시기로 전년도 평가실적이 차년도 성과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존재
  - ※ 1차 연도 과정 승인 후 실적이 저조하여도 개설 실적으로만 판단하여 2차 연도 과정 진행, 3차 연도 성과평가는 2차연도 성과가 아닌 1차 연도 성과를 바탕으로 반영
- (조치) 훈련에 대한 성과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는 성과평가 지표 및 체계 마련

#### ❸ 정성평가(프로젝트 평가) 운영 방식 개선 (권고)

- ❖ 프로젝트 평가(정성)는 전체평가 비중의 30%를 차지, **다수의 과정**을 운영 하더라도 **훈련기관이 선택한 2개 과정에 대해서만 평가** 
  - \* '23년 프로젝트평가 결과 수준미달(점수 40% 미만) 과정은 626개 중 9개(1.4%) '24년 901개 중 3개(0.3%)
- (문제점) KDT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임에도 평가 과정을 훈련기관이 선택토록하여 부적합 과정 평가의 실효성이 없고, 성과평가에서 비중도 낮은 등 효과성 미흡
- **(조치) 프로젝트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효적인** 평가 방법으로 개선

#### 5 KDT 훈련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개선), (권고), (시정)

- ❖ KDT 성과평가 결과는 훈련기관에 참고하도록 e-mail 발송, 훈련 과정 심사(물량조절, 사업배제)에 활용하는 등 내부 자료로 사용
- ❖ 훈련생이 활용하는 고용24에는 훈련기관별로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훈련개요, 훈련교재, 훈련강사 등)를 제공
- ❖ 심평원은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우수훈련기관 선정, 우수훈련기관 모니터링 실시 후 취소기준 해당 시 우대사항 배제조치
  - \* 우수훈련기관: 567개소, 이중 우수훈련기관 취소 기관수: 53개소('24년)
- (문제점) <sup>①</sup>성과평가 결과가 훈련생에 제공되지 않는 등 평가결과 활용 미흡, <sup>②</sup>고용24 정보 제공 미흡\*으로 훈련생의 훈련과정 선택시 한계, <sup>③</sup> 우수훈련기관 취소 시 인증마크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 미실시로 인증마크 부적정 사용기관 확인
  - \* <sup>1)</sup>고용24 정보제공의 추상성, <sup>2)</sup>9개 직종만 정보 안내, <sup>3)</sup>우수훈련기관 선정 시 KDT 과정 실적 미포함, <sup>4)</sup>KDT훈련과정에 대한 취업률 정보 미제공
- (조치) <sup>①</sup>훈련생을 위한 성과평가 활용방안 마련, <sup>②</sup>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고용24에서 제공, <sup>③</sup>허위 정보 제공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수시모니터링 등을 통한 절차 개선

## Ⅳ 조치사항

####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소관 局<sup>\*</sup>은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지도·감독** 등 조치
  - \* 직업능력정책국(인적자원개발과)
- 서울강남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경기지청, 안양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우수인증마크 부적정 사용 훈련 기관에 대해 확인 후 시정조치 조속히 이행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

-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은 조속히 이행
  - 지적사항에 따라 이행(개선)계획 수립 등 조치하고, 자체 개선이 가능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개선